



심각한 피해의 위험 - 신고의 의무 [안내 자료]

아동 및 청소년(양육 및 보호)법 1998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 이하 '법')

브로큰베이 교구에서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정보

아동 및 청소년(양육 및 보호)법 1998(NSW)에 따라 특정 개인은 아동이 심각한 피해의 위험(Risk of Significant Harm, 이하 'ROSH')에 처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및 법무부(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NSW 주에서 '신고 의무자(Mandatory Reporter)'란 누구인가요?

NSW 주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직 또는 기타 직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사람과,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에게 신고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료, 복지, 교육, 장애 서비스, 아동 서비스, 주거 서비스, 법 집행

종교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아동에게 종교 관련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 및 심리학자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된 심리학자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의 의무가 우리 교구청와 사목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종교 사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아동에게 종교 기반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WWCC 면제자 포함). 신고 의무자의 예로는 성직자, 아동 전례 자원 봉사자, 청소년부 지도자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예로는 교구 총무, Chancery Safeguarding 직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 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는 분은 보호 사무소(Safeguarding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아동이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그러한 근거를 업무 또는 역할 수행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을 위험이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아래와 같은 피해 상황 중 하나의 경우가 심각하여 현재 아동의 안전, 복지, 안녕에 우려가 되는 경우, 아동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
- 아동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아동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고, 주선할 수 없거나, 주선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 학교 적령기 아동의 경우,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고, 주선할 수 없거나, 주선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우**
- 아동이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 아동이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정에 살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거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아동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여 아동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겪을 위험이 있는 경우

신고 의무자가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고 의무자는 소속 교구 사제나 보호 사무소(Safeguarding Office)에 지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와 신고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 신고 의무 가이드 (Mandatory Reporter Guide)를 참고하세요.

보호 사무소는 이메일 safeguarding@bbcatholic.org.au 또는 전화 **02 8379 1605** 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가이드 링크: reporter.childstory.nsw.gov.au/s/mrg

신고 방법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역사회 및 법무부(DCJ)에 신고하십시오.

- a) 전자 신고서 제출: reporter.childstory.nsw.gov.au 또는
- b) 아동 보호 도움의 전화: **132 111** (24/7 연중무휴)

DCJ에 제출된 모든 신고서는 보호 사무소(Safeguarding Office)에도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전자 신고서 사본이나 전화 신고를 한 경우는 RoSH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지원

신고를 요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아동에 대해 우려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원 방법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미출생 태아에 대한 신고

미출생 태아에게 대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DCJ 및/또는 기타 기관이 출산 후 신생아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보호 또는 법적 개입 등 적절한 준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Diocesan Mandatory Reporting Policy(교구 의무 신고 정책)

When is a Child at Risk of Significant Harm? Fact Sheet(아동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 - 안내 자료)

Risk of Significant Harm Mandatory Reporting Flowchart(심각한 피해 위험 의무 신고 결정표)

Risk of Significant Harm Form (심각한 피해 위험 양식, RoSH Form)

추가 정보

신고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사회 및 법무부 웹 사이트 참조:

facs.nsw.gov.au/families/Protecting-kids/mandatory-reporters/about